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통합발주 사유서

사 업 명		국방AI 데이터센터 실증목적 GPU 구매						
예산과목	프로그램	단위	세부	하위1	하위2	하위3	목	세목
	2300	2131	302	007	000	000	210	07
예 산 액		1,800,000,000원			발주금액		1,619,693,530원	
사 유		1. 본 사업 중,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장비는 컴퓨터서버(4321150102)가 해당됨. 2. 위 1개 제품에 대해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(재정경제부계약예규 38) 제2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- 본 사업은 GPU 서버를 중심으로 서버랙, KVM 스위치, 네트워크 스위치, 보안OS,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, 백업 솔루션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임. - GPU 서버는 AI 연산 및 LLM 운영을 위한 핵심 장비이며, 서버랙, KVM 스위치 및 네트워크 스위치는 GPU의 설치·운용·접속·연동을 위한 필수 부대장비임. - 각 품목을 분리발주할 경우 장비 간 호환성, 보안OS 적용, 계정 관리 연동, 백업 에이전트 설치, 네트워크 구성, 성능검증 및 장애 발생 시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함. - 특히 GPU서버의 성능 및 안정성은 서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, 운영체제, 보안OS, 백업 솔루션 및 접근통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, 단일 계약 또는 공동수급체를 통한 통합 구축이 필요함. - 이에 본사업은 분리 발주보다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, 성능보장, 보안성 확보, 장애대응 및 하자보증 책임 일원화 측면이 타당함.						
관련법규 및 근거		●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●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1 - 3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						

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(제7조 관련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번호	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	수량	②직접 구매 여부	③제외 사유	④비고
1	보안 OS (Secuve Tos)	1	직접구매 [] 제 외 [√]	제9965부대는 빅데이터 및 AI 체계 개발·운영을 위한 서버 환경이 구축 되어 있어 타 보안OS의 도입시 연동 및 통합 모니터링 등에 제한이 발생함	
2	패스워드 관리 (PassGuard)	1	직접구매 [] 제 외 [√]	관리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타 솔루션 도입 시 장비 통합 운영 및 관리에 제한이 발생함	
3	백업SW (Backup xcelerator)	1	직접구매 [] 제 외 [√]		

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.

2026 년 4월 16일
국군 제9965부대장

유의사항

1. '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'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
 2. '②직접구매 계획여부'는 공개경쟁입찰,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(√),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(√)(제외사유 명시 필요) 표기
 3. '③제외사유'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
 4. '④비고'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,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
- ※ 제8조제3항에서 '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'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

혼재사업 통합발주 사유서

- **관련 근거** :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(기재부 계약예규 제802호, '25.10.30)
제2조의2(물품, 용역,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)

-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, 용역,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1. 물품·용역·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·가분성
 2.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
 3.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
 4.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
 5.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

□ 혼재사업 통합발주 사유

- ① 물품·용역·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·가분성
- 본 사업은 “국방AI 데이터센터 실종목적 GPU 구매” 사업으로 HW(물품)와 AI 모델 포팅(용역)이 기술적으로 고도로 결합된 사업으로서, 목적물별로 분리 발주할 경우 기술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어렵고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져 독립적 집행이 제한됨.
-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
- 본 사업은 관련 공사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가 실제 과업을 수행하도록 입찰 자격 설정
-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
- 본 사업은 고도의 기술적 정합성을 요구되는 혼재사업으로서, 분리 발주시 업체간 책임회피 및 공정 간섭으로 인해 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여 계약 이행의 안정성 확보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발주 시행
-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
-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포함된 다수의 구성요소는 상호작용을 하므로 일관성 있는 체계통합과 통합적인 사후관리 수행이 필요함
-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
-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조항을 명시하였으며, HW와 SW 역량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술 경쟁을 유도함

국군 제9965부대장



소프트웨어 사업관련 법령준수(적용) 여부 검토의견

기 관 명	국군 제9965부대		
사 업 명	국방AI 데이터센터 실증목적 GPU 구매		
사 업 금 액	1,799,056,953원	담당부서	수집운영처 지능정보관리과

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	권고 수용 여부	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
1. 과업심의위원회	○	체계규격심의 개최 '1.5 사업적용 법규'에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내용 명시(제안요청서 P.8)
2.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(BMT)	X	해당사항 없음 (제안요청서 P.64)
3.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	○	'일할 참가자격'에 20억 미만 사업으로 종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불가 내용 명시(제안요청서 P.57)
4. 하도급 제도	X	하도급 미허용(하도급 비율 제한 50% 초과)
5. SW사업 작업장소(원격개발)	X	별도 작업장소 불필요
6.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	○	지식재산권 명시 (제안요청서 P.35)
7.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	X	해당사항 없음(타기관과 공동사용 없음)
8.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	○	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명시 (계약특수조건 P.9 ~ 10)
9. 특정규격 명시 금지	○	특정규격 명시 금지 준수 및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 완료
10.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(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)	○	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진행
11. 기술능력 평가비중(90%) 도입	○	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진행
12.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	○	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진행
13. SW사업 제안서 보상	X	해당사항 없음(총사업예산 20억원 미만)
14. 요구사항 상세화	○	제안요청서에 명시
15.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	X	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(제안요청서 P.38)
16.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	X	투입공수 방식의 사업(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)
17. SW사업 영향평가	X	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SW사업
18. SW사업정보 제출	X	해당사항 없음(SW개발이 아닌 시스템운영환경 구축)

* 주1) 법령 : ○ (수용), X (수용불가), △ (일부 수용)

국군 제9965부대 수집운영처장 해.대령 남궁민우 (인)